

일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보호 관련 방침

일본의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연구회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보호와 네트워크 유통의 원활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다.

1.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의 현상과 변화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정보통신과 컴퓨터와의 제휴와 융합을 통해 방송서비스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시청자의 선택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도 통신위성(CS)을 이용한 디지털방송이 1996년, BS디지털방송이 2001년 12월부터 개시되었으며, 동경 110도 CS디지털방송이 2001년 말 이후,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2003년 말 이후 순차 개시될 예정이다. CATV도 이미 1998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방송이 개시되었으며 통신서비스도 제공되는 풀서비스화, BS디지털방송 등의 디지털 재송신, 광역 사업자간 제휴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DSL이나 FTTH 등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등장함과 동시에 정보압축기술의 발전으로 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유료로 송신하는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환경으로 정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총무성 '2001년 정보통신에 관한 현상보고'에 의하면 2000년 말 인터넷 이용자수는 4,70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74.0%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브로드밴드서비스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DSL 가입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방송 디지털화나 네트워크의 브로드밴드화는 종래의 패키지 판매가 주류였던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장을 네트워크계 미디어 중심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단, 현재로는 엔터테인먼트계 인터넷 판매시장 규모가 작고 디지털콘텐츠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네트워크계 미디어 비율도 30%정도이다. 그 중 영상계 콘텐츠 비율은 특히 낮으며, 향후 브로드밴드서비스 보급확대를 목표로 하고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저작권을 처리하고 송신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술혁신과 함께 넵스터와 같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peer to peer의 파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2.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의 네트워크 유통시장 형성은 콘텐츠 유통에 관한 여러 권리의 전체상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음악콘텐츠 송신은 영상 등과 비교하여 전송용량이 비교적 적고 권리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 송신 비즈니스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며 영상 콘텐츠 송신 비즈니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broadband 시대를 위해 저작물의 부정 이용대책이나 권리의 원활한 처리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다수의 권리자 사이에 처리할 경우에는 주로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광의의 저작권과 홍보권(초상권, 성명권 등)이 문제시 된다. 저작권법에는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기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각색, 영화화, 기타 변안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정의하고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쌍방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실시한 본인이 '저작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한해, 창작활동을 실시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회사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광의의 '저작권'과 협의의 '저작권'으로 나누어 다양한 권리로 세분된다. 협의의 '저작권', '저작자인격권'과 함께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권리가 발생, 권리를 얻기 위한 수속은 일절 필요하지 않다. 또한, 권리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이지만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제한하고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 두면 문화적 소산인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어 문화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배려적인 조치이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창작에 준한 행위를 통해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은 협의의 '저작권', '저작자인격권'과 같은 실연, 레코드에의 고정,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실시한 시점에서 발행, 권리를 얻기 위한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은 실연, 레코드에의 고정,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실시된 때부터 50년간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와 권

리자 사이에 실시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양한 권리 처리가 필요한 영상 콘텐츠 등의 경우, 권리 처리를 통해 유지되었던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리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부정이용의 온상이 되었다. 권리자는 허락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결과적으로 콘텐츠 유통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콘텐츠에 액세스 가능하고 복제나 편집, 개편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권리자 자신이 그 권리 이용자와 각각에게 권리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권리자의 권리를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허락을 실시하는 집중적 권리처리시스템의 존재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저작물'이용에 관한 상담이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의 중개 업무 단체 이외에도 일본 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등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지만 JASRAC나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등의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저작권관계단체의 대부분은 권리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권리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도 모든 권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권리자와의 개별 교섭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또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

3. 방송용 콘텐츠에 관한 권리

방송프로그램에는 다수의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작에는 다수의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 우선 방송프로그램에는 소설·각본·시나리오 등의 원작품의 저작자 및 방송프로그램에서 이용된 음악·미술, 기타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등이 있다. 또한,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 방송프로그램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 즉 영화의 저작물로서 방송 프로그램 자체의 저작자의 저작권도 관여된다. 방송프로그램 자체의 저작자의 저작권은 제작회사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제작회사에 귀속한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해 기술적 수단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방송에 관한 권리만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또한, 배우나 가수 등의 실연가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 레코드를 사용한 경우의 레코드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관여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함께 초상권 등의 홍보권이 관여되는 경우도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2차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관계를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필요한 복잡한 권리처리를 기본적으로는 JASRAC 등의 권리자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권리처리 규정은 단체에 따라 다양하며 정비 상황도 동일하지 않다. 방송프로그램의 2차 이용시의 권리처리도 제작의 경우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CS방송, BS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에의 송신 등의 2차이용을 위한 규제정비는 충분하지 않으며, 권리자측과 이용자측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저작물 등의 사용요금을 권리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권리관계 그 자체는 해결되더라도 해당 방송용 콘텐츠의 증대하는 2차이용 비용이 회수 가능한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러한 저작물 등이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사명 등을 이유로 저작물 등을 방영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상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우선, 방송을 위해 일시적 고정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저작권(복제권), 실연가의 저작인접권(녹음권·녹화권), 레코드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제작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을 위한 취급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서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고정이라도 저작자의 복제권 등은 제한되어 있다. 방송을 위해 일시적 고정을 통해 녹음·녹화한 저작물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서는 그대로 송신할 수 없다. 상업용 레코드의 2차이용은 실연가, 레코드제작자에게 2차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양자의 허락이 없이도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용할 때마다 권리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가 방송프로그램에 제작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광범한 범위에 걸쳐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악 대량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을 위해 JASRAC와의 사이에 포괄적인 권리처리 규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처리업무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에 관해 저작인접권으로 복제권, 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TV방송의 전달권을 보유하고 있다. 방송을 수신하고 이를 서버에 복제하여 브로드밴드네트워크송신을 실시하는 형태로 방송용 콘텐츠를 2차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송용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처리와 함께 해당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처리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스스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방영하는 방송용 콘텐츠의 2차이용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경우, 타 권리자의 여러 권리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처리하는지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라고 하겠다.

4. 공중송신권

1986년의 저작권법 개정 이후, 서버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공중 신청에 따라 송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인터랙티브송신은 '유선'인 경우에는 '유선송신', '무선'인 경우에는 '방송'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보전달기술 발전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병용하는 송신형태가 출현되고 있는 등 유선·무선 구별의 필요성이 없어지며, 인터넷의 보급·발달 등을 통해 유선·무

선의 인터랙티브송신에의 특별한 대응이 필요해 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7년에도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 유선, 무선을 불문하고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새롭게 '자동공중송신'으로 정의하고, 서버형 송신의 저작권법 상의 위치 정립을 '방송'이나 '유선방송'으로 구별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공중에의 송신전체를 '공중송신'으로 정의한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여 인터넷이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송신가능성'행위도 포함된다. 이 개정을 통해 '자동공중송신'과 '방송'/'유선방송'과의 차이는 수신자가 송신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부의 차이 이다. 스트리밍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콘텐츠송신서비스인 인터넷 방송은 기술적인 구조로 인해 현재 '자동공중송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로는 동일한 콘텐츠를 '방송'으로 '인터넷송신'으로 송신하는 경우, 필요한 권리처리 내용이 서로 다르다. 어떤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위해 서버 내의 HDD 등에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실연자의 '녹음권' 및 '녹화권', 레코드제작자의 '복제권' 이용허락을 사전에 얻지 않으면 안되는 반면, 방송의 경우에는 사전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 레코드를 2차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가의 '송신가능화권', 레코드제작자의 '송신가능화권'의 이용허락을 사전에 얻을 필요가 있는 반면, 방송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의 이용 허락만 사전에 얻어 두면, 실연가, 레코드제작자로부터의 사전 이용허락을 필요하지 않으며 2차 이용요금 지불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방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송신하려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2차 이용이 진행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CD송신을 하려는 경우 통상 방송의 경우에는 작사가·작곡자 혹은 관리사업자단체인 JASRAC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얻기만 하면 되지만 인터넷상의 송신인 경우에는 이와 함께 실연가, 레코드제작자로부터의 이용허락도 얻지 않으면 송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송신인 경우 이용허락을 규제화하려는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5. 저작권법 관련 동향

문자, 음성, 화상 등의 다양한 정보·소프트(저작물)를 융합한 멀티미디어의 출현, 네트워크 상에서의 송신에 의한 정보·소프트(저작물)의 유통·이용 확대, 이용자에 의한 정보·소프트의 가공, 송신 등의 인터랙티브한 이용 증대, 디지털기술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저작권관리, 비즈니스 확대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법개정을 포함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원활한 권리처리체제 정비에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시행이 2002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등 권리처리 규제 확립을

위한 단체활동, 저작권정보의 집중창구인 J-CIS(저작권관리정보집중시스템)구축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나 네트워크화 등에 대응한 새로운 국제적 대처로 1996년 12월에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에서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레코드조약'이 채택되어 이를 근간으로 1999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권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제보호(copy protection) 등의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는 장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나 권리관리정보 개변 등의 규제가 창설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충실도도모되고 있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에 관한 등록제도를 실시, 위탁관리계약약관 및 사용요금 규정 신고와 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업무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하고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동 법은 2000년 11월에 성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본 법의 실행과 함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 관련 법률'은 폐지되었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은 저작권자 등을 대신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을 실시하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에 민간의 신규참가를 촉진하고 재정적 기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유롭게 신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종래에는 음악, 소설, 각본 등의 4종류의 저작물로 한정되었으나 새롭게 게임소프트, 사진, 영상, 실연, 레코드 등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전반이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저작물 등의 사용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시행 후에도 실적이 있는 관리사업자의 영향력은 남겠지만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저작권자가 서비스내용에 따라 관리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자신이 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음악 이외의 영역에서의 관리업무는 아직 미숙하며 향후 콘텐츠 이용상황의 파악·감사, 사용자의 본인인증, 저작권 사용요금의 과금·징수·분배 등의 관련 규제화나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브로드밴드콘텐츠의 유통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저작권심의회 국제소위원회가 2000년 11월에 정리한 보고서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진전에 대응한 국제저작권정책 방침'은 국제적인 저작권 정책의 전체상 및 향후 정책 방침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6.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관련 기술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된 디지털 콘텐츠가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작자로부터

터 최종사용자 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 간이나 동일 사용자의 단말간 유통과정에서 액세스 관리기술, 복제관리기술, ID관리체계, 콘텐츠송신기술, 과금기술 등 관련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세스관리기술은 송신 시에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인정된 이용자만이 열쇠를 입수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을 베이스로 한 캡슐화 기술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사회에서는 한사람에 의해 액세스 관리가 파괴되면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콘텐츠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정보가 세계에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사의 액세스관리기술의 정보처리상호운용 확보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2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부정복제에의 기술적 대책은 부정복제대책보다도 이외의 이점을 우선하는 ‘복제허용형’, 부정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제어하는 ‘부정복제방지형’, 직접적인 방지는 할 수 없으나 나중에 부정복제 사실이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복제를 억제하는 ‘부정복제억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대책이 적당한지는 콘텐츠의 가치나 제작자, 송신자 등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부정복제방지형’ 대책은 휴대전화나 DVD플레이어 등의 특별한 서버형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범용PC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다. PC를 이용단말로 하는 경우의 대책이나 복제관리가 힘든 경우의 대책, 표준화 시기와 활동 등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제작자, 송신자 등이 안심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를 송신 가능하며 사용자도 매력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부정유통을 억지하는 기술 확보와 함께 콘텐츠송신기술, 과금기술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콘텐츠송신기술에서는 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대량 동시에 장시간 안정적인 품질로 효율적·경제적으로 송신하기 위한 기술 확립이 특히 시급하다. 또한, 과금기술은 콘텐츠 이용에 따라 정확한 과금이 실시되어 저작권 등에 이용요금이 확실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다양한 국제단체의 표준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술의 표준화단체가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나 기술 등은 다양하다. 향후 인터넷 보급과 네트워크의 브로드밴드화,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실현하는 각종 기술은 다양하게 관련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어 시스템으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